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술실 촬영 영상정보 열람제공시 비식별화 조치〉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645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3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6

I .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0. 10.
- (3) 회 부 일 : 2024. 10.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수술실 내에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상정보 중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가 노출되는 등 환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5항).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제5항에 따른 열람·제공의 절차, 제9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⑩ ----- ----- ----- ----- ----- -----제공의 절차 및 비식별화 조치의 범위----- ----- -----.
⑪ (생략)	⑪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령상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함.¹⁾
- 설치장소 및 기능과 관련하여,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여

1)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야 하고,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촬영, 모니터를 통한 영상 구현, 영상정보 녹화·저장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함..²⁾

-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처리 기능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으나,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23. 9.)에 따르면 촬영 모니터링 등의 과정에서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해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처리 기능 등을 임의로 적용하려는 경우에도, 촬영한 영상정보가 열람·제공될 때는 마스킹이 적용되지 않은 원본이 열람·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³⁾
- 촬영실시와 관련하여,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에만 실시하여야 하고, 촬

2)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별표 7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제39조의9 관련)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수술실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서는 안 된다.

마.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2023. 9.), p.4.

- | |
|---|
| <p>☐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처리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음</p> <p>○ 촬영 모니터링 등의 과정에서 민감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처리 기능 등을 임의로 적용하려는 경우에도, 촬영한 영상정보가 열람·제공될 때는 마스킹이 적용되지 않은 원본이 열람·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의료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업무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에 이루어짐</p> |
|---|

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음.⁴⁾

- 영상정보의 열람·제공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은 ①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 법원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③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열람·제공 허용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⁵⁾

□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부위를 가리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에 담긴 환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4)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5)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만, 현행법상 영상정보 열람·제공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모든 영상의 열람·제공시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상이 필요한 경우나 범죄 수사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 사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규정 보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⁶⁾

현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2023년 11월)에 따라 의무 설치 대상 의료기관들이 CCTV 설치를 완료한 상황이나 비식별화 기능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비식별화 기능 의무화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⁷⁾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절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임.

6) 법무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

7) 대한병원협회 의견

- 현행법은 법원·수사기관·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한 경우만으로 영상정보 열람·제공을 엄격히 제한하여 환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였으므로, 추가 조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수정수용)

-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4항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나, 의료사고 발생 등으로 긴급하게 CCTV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비식별화 조치를 이유로 열람·제공이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비식별화 조치의 예외 사유(예시: 범죄수사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3) 법무부(수정수용)

-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사안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상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비식별화의 범위만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비식별화의 예외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8)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대한병원협회(신중검토)

□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대상 의료기관 모두 CCTV 설치를 완료한 상황이므로, 비식별화 처리 기능이 없는 CCTV 장비를 이미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관련 프로그램 또는 장비 설치 및 관리 인력의 배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함.

- CCTV 영상의 비식별화 처리 기술 수준, 숙련된 전문인력의 배치 필요성, 비용 발생 규모 등을 먼저 검토하여, 어려운 기술이 요구되거나 큰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예외 없이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함.

5) 대한의사협회(반대)

□ 영상정보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민감한 신체부위 촬영을 인지한 상황에서 촬영을 허용 또는 동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법원, 수사기관, 중재원 등 법적 권한이 있는 자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열람·제공되는 것을 고려할 때, 비식별화와 같은 추가적 조치의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CCTV 설치 관련 현행법 개정취지에 반한다고 사료됨.

- 비식별화 조치 관련 소요 비용은 요청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한국환자단체연합회(반대)

□ 현행법상 CCTV 촬영은 의무적 촬영이 아니라 환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촬영되고, 환자 신체 주요 부위를 근접 촬영하는 것이 아

나라 벽면에 설치하여 촬영하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환자의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고, 응급수술 등에 대하여는 의료인이 촬영 거부하여 촬영 자체가 안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반대함.

- 수술실 내 의료진의 범죄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방지하고 의료사고 발생 후 응급처치 등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의료법」상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규정과 노인학대 방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목적으로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폐쇄회로 텔레비전 규정은 구분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7) 대한간호조무사협회(찬성)

□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 환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여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494